

‘유연 옥사’의 담화 전략 연구

-〈유연전〉의 두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정인혁*

〈차 례〉

1. 서론
2. ‘유연 옥사’를 둘러싼 엇갈린 진술들과 논의의 초점
3. 두 여성의 담화 전략
 - 1) 백 씨: 신원 확인에서 강상 고변으로
 - (1) 사적 정보의 통제와 진가 판별의 지연
 - (2) 대면 거부에서 고변으로: 발화 장면의 전환
 - (3) 반복 호소와 사건 관찰지의 변경
 - 2) 이 씨: 언문 가승(家乘)에서 〈유연전〉으로
 - (1) 언문 가승의 문자화와 공적 승인
 - (2) 감정적 언어의 법률어화
 - (3) 지언자(知言者)에게 맡긴 대리 발화의 기획
4. 유연 옥사와 〈유연전〉의 여성서사로서의 성격

〈국문초록〉

본고는 백사 이항복의 〈유연전〉에 나타난 ‘유연 옥사’를 두 여성 인물의 담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백 씨와 이 씨는 가부장제 아래 단순히 침묵하는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사족 가문의 구성원이라는 신분적 지위와 여성으로서의 제도적 제약을 동시에 지닌 인물들이다. 이에 본고는 이들을 상황에 따른 ‘제한적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이들이 제한된 발화권을 법적·문자적 공적 효력을 지닌 담화로 전환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유연의 형수 백 씨의 담화 전략은 유유라고 자처하며 돌아온 자의 진위를 판별하는 장면을 통제하고, 사건의 성격을 ‘남편의 진위 판별’에서 ‘형 살해의 강상(綱常)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 교수

범죄'로 전환하는 데 있었다. <유연전>과 <이생송원록>에 나타나는 백 씨와 채응규 사이의 편지 왕래와 은폐, 관정에서의 대면 거부, 은밀한 신체 정보의 제시, 반복적 호소와 사건 관찰지 이동 요청은 모두 진위 판별을 위한 사적 정보를 법적 고변의 공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절차적 담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유연의 처 이 씨는 남편의 원통함을 언문 가승(家乘)과 개인적 기억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이원익과 이항복이라는 공적·제도적 권위를 지닌 지언자(知言者)를 통해 대리 발화함으로써 한문 서사 <유연전>으로 문자화·권위화하였다. 특히 이 씨의 호소는 단순한 감정 표현에 그치지 않고 '강사인(强死人)', '극전(極典)', '설원(雪冤)'과 같은 법률적·행정적 어휘로 번역됨으로써 공적 담화로서의 설득력을 획득한다.

이 점에서 본고는 기존 연구가 제기한 '문자화'의 문제의식을 수용하되, 그 문자화가 감정적 언어의 법률어화와 함께 공적 지위를 지닌 대리 발화자의 설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연 옥사를 둘러싼 두 여성의 제한적 발화가 사법적·문학적 장치를 거쳐 공적 효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 <유연전>의 여성서사로서의 가능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유연 옥사, <유연전>, 담화 전략, 제한적 행위주체, 문자화, 대리 발화, 여성서사

1. 서론

조선 명종대 현감을 지낸 대구의 사족 유예원의 아들 유유가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어졌다. 그의 동생 유연은 4년 뒤인 1562년 종매부 달성령 이지로부터 채응규라는 자가 유유라는 소식을 듣는다. 1564년 유연은 채응규가 가짜라고 생각하고 대구부에 고발했다. 대구에서 진위를 가리던 중 병보석을 받아 거처를 옮긴 채응규는 자취를 감춘다. 그러자 유유의 아내 백 씨는 사라진 채응규가 자신의 진짜 남편이며 그의 동생 유연이 가권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형을 살해한 것이라고 고발한다. 강상(綱常) 죄인이 된 유연은 심문 과정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무복(誣服)한 뒤 사형

에 처해졌다. 그러나 선조 13년(1580), 죽은 것으로 알려졌던 진짜 유유가 ‘천유용’이라는 이름으로 생존해 있었음이 밝혀진다. 채응규는 가짜였고, 사건은 재조사되었다. 채응규와 그의 아내 춘수가 체포된다. 하지만 채응규는 서울로 압송되던 도중 자결하고 춘수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배후로 유연의 종매부 달성령 이지 등이 지목되었다. 이지는 무죄를 주장하다 심문 도중 사망한다. 이것이 조선중기 명종대 발생한 ‘유연 옥사’이다.

유연 옥사를 전하는 대표적인 문헌은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의 <유연전(柳淵傳)>이다. 그런데 <유연전>과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술하는 텍스트도 존재한다. 권득기의 <이생송원록(李生訟冤錄)>은 달성령 이지의 아들 이언용이 쓴 <송원(訟冤)>을 바탕으로, <유연전>에는 보이지 않는 추안과 국안(推案及鞫案), 공초문 등을 활용하여 <유연전>의 논리를 반박한다. <이생송원록>은 달성령이 사건의 배후라는 주장이 담긴 유연의 편지가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 달성령의 범행 동기가 불명확하다는 점, 채응규의 첩 춘수가 증언을 번복한 점, 채응규와 백 씨에 대한 조사의 미흡함 등을 들어 달성령의 무고를 주장한다. 결국 사건은 하나지만, 그 사건을 둘러싼 담론은 여럿이다. 엄밀히 말해 사건 당시의 진실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진실에 관한 논쟁은 종결되지 않았다.

<유연전> 그리고 유연 옥사와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유연전>은 송사소설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실제 사건의 소설화라는 관점에서도 논의되었다.¹⁾ 또한 <송원록>이나 <이생송원록> 등 <유연전>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들을 검토하여 유연 옥사를 재구성하려는 논의도 있었다. 김영연은 <송원록>, <이생송원록> 관련

1)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노꽃분 이, 「<유연전>의 구성적 특징과 서술의식」, 『한국고전연구』 1,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345~371쪽; 이현홍, 『한국 송사소설 연구』, 삼지원, 1997; 정인혁, 「<유연전>의 시점과 플롯 연구」,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143~157쪽.

논의를 통해 <유연전> 관련 서사의 확장 양상을 구체화했고 김정녀는 서사 속 ‘증언의 권리’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살펴, <유연전>과 <이생송원록>이 각각 원통한 죽음을 알리려는 의도 아래 기획된 서사이며, 특히 이씨의 언문 가승(家乘)이 지닌 하위성과 그것의 문자화 문제를 제기했다.²⁾ 내용 면에서는 정공식이 조선 중기 상속의 문제를 사법제도의 차원에서 살피면서 유유의 가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고 이 논점은 강명관의 논의로 이어져 유연 옥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형성했다.³⁾ 요컨대 선행 연구들은 <유연전>과 유연 옥사를 실제 사건의 서사화, 가권 및 재산 상속, 제사권 등의 법적 절차, 가족 윤리의 균열 양상 등 다양한 맥락에서 조명해 왔다.⁴⁾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전제로 하되, 논점의 중심을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에서 ‘각 인물의 발화와 기록이 어떤 공적 효력을 획득했

2) 김정녀는 <유연전>을 포함한 유연 관련 서사가 권력 담론 속에서 ‘증언의 권리’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살피면서 각기 다른 증언의 형식을 통해 여성 인물의 발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정녀, 「유연 옥사에 관한 두 편의 서사와 증언의 재구성」, 『동양고전연구』 92, 2023, 119~152쪽.

3) 정공식은 상속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재산 분배와 제사 계승의 문제를 중심으로 유교적 가족 질서의 내적 모순을 드러낸다고 해석하였다. 정공식, 「<유연전>에 나타난 상속과 그 갈등」, 『법사학연구』 21, 한국법사학회, 2000, 83~100쪽; 강명관, 『가짜 남편 만들기 : 1564년 백씨 부인의 생존전략』, 도서출판 푸른역사, 2021.

4) 그 외에도 <유연전>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박성태는 <유연전>의 갈등 양상을 분석하면서 부부 관계와 부자 관계의 파열이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균열을 드러내는 내적 긴장의 작용이라고 하였다. 김진영은 <유연전>을 조선 중기 사회 변화의 징후로 읽으며, 신분 질서와 여성의 가정 내 지위 변화가 서사 속에 복합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살폈다. 김용기는 실록의 서사적 인물 구성과 소설의 인물형을 비교하여 사건의 사실적 재현보다 도덕적 정당화와 사회적 메시지에 중점을 둔 문학적 재구성물로 분석했다. 박성태, 「<유연전>에 나타난 가정 갈등 양상 연구」, 『인문과학』 37,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6, 101~124쪽; 김진영, 「<유연전>에 나타난 조선중기의 가회변화와 지향의식」, 『어문연구』 84, 어문연구학회, 2015, 49~85쪽; 김용기, 「인물 서사 비교를 통해서 본 유연 옥사와 <유연전>의 간극 : 진가 판별과 창작 의도를 곁다려」, 『온지논총』, 온지학회, 2021, 209~238쪽.

는가’에 두고자 한다. 특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두 남성, 유유와 유연의 처인 백 씨와 이 씨의 담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유연 옥사의 표면에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지만 사건의 결정적 국면에는 두 여성의 행위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연 옥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점, 먼저 가짜 남편의 진위 문제를 유연의 형 살해라는 강상 범죄로 전환시킨 장면에는 유유의 처 백 씨가 있고 강상 죄인으로 죽은 유연의 억울함을 언문 가승(家乘)과 기억으로 보존하고, 그것이 이원익과 이항복을 거쳐 <유연전>이라는 한문 서사로 구성되어, 결국 유연 옥사에 대한 지배 담론의 위치를 접하게 만든 데에는 유연의 처 이 씨가 있다. 문제는 이 두 주체가 ‘제한적 행위주체’라는 점이다.

백 씨와 이 씨는 노비나 평민 여성이 아니라 사족 가문의 여성으로서 일정한 신분적 지위를 지닌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가부장제에 종속된 하층 계급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법정, 관료제, 공론의 장에서는 남성 사족과 관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화의 기회와 처신의 자유가 제한되고 사법 절차와 한문 중심의 문자 체계 안에서 자신의 발화를 직접 공적 권위로 승인받기는 어려운 존재였다. 예를 들어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들은 사족 여성으로서 그 행위가 강제되기 어려운 존재인가 하면(가), 또 한편으로는 그 발화의 신뢰성 자체가 폄하되고 의심되기도 하는 존재이다(나).

(가) 집안사람과 일가붙이 모두가 유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녀자가 사족으로서 누군지 모르는 자를 어찌 마땅히 더불어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監司令白氏親辨, 則拒不就曰, 家人族黨咸曰非游, 妾以士族豈宜與所不知何人者對面也. <유연전>⁵⁾

5) 李恒福, <柳淵傳>, 朴熙秉 標點 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390쪽. <유연전> 인용 본문은 이하 동. 인용문 끝은 쪽수.

(나) 무릇 이 씨는 일개 부인일 뿐이다. 유연의 억울한 마음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그녀보다 앞설 수 없다. 하지만 당시 국문하던 실정과 증좌, 공초의 말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 들은 것은 대개 노복들의 말로 전한 것이거나 길에서 떠도는 헛소문에서 나온 것이며...

夫李氏一婦人耳。其於淵冤枉之心，曲知之者，固莫能先也。至於當時鞫獄之情，證佐供招之辭，則有未能詳者，其所聞，蓋皆出於奴僕信口之傳，道聽塗說之訛...⁶⁾ <이생송원록>

곧 이들은 양반이라는 신분적 특권과 가부장제 하 여성이라는 젠더화된 제약이 교차하는 위치에 존재한 자들이다. 여기에서 신분상으로는 사족의 범주에 들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공적 권위를 직접 인정받기 어려운 두 여성을 이해하는 데에 주체 지위와 대상 지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스피박의 서발턴Subaltern 개념을 참고한다.⁷⁾ 물론 전술한 바, 이들은 지배 담론 내부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지 않는 존재⁸⁾라기보다

6) 강명관, 앞의 책, 63쪽.

7) 백 씨나 이 씨 모두 순수하게 완전히 무력하거나 침묵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발언권이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해 공적 효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비록 목소리는 갖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스피박이 이야기하듯이 승인된 말을 한다고 하기는 어렵더라도 그가 하는 말을 들을 가능성은 있다는 점에서 서발터니티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두 여성을 이해하는데 서발턴 개념이 참고할 만한 것이다. 다만 스피박이 서발턴 개념을 어떤 정체성이라기보다 어떤 ‘곤경’으로서 권력에 접근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장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두 여성의 담화 전략을 논하기 위한 기술적 개념으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 61~65쪽; 71~74쪽, 129~130쪽 참고.

8) 스피박은 하위주체의 문제를 단순히 그가 “말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 말이 지배적 재현 체계 안에서 들리고 읽힐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제기한다. 말은 하더라도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특히 그는 재현representation의 두 의미, 곧 정치적 대변과 미학적 재현을 구분하면서, 권력을 지닌 공적 담론의 지식인이

특수한 성격을 지닌 존재로 이해된다. 신분을 고려할 때 완전히 종속된 존재, 말할 수 없는 존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하더라도 공적인 체계 내에서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점-말하는 행위뿐 아니라 공적 체계 내에서 의사소통의 한 주체로서 인식되는가 하는 점-에서 제도적 권위와 문자적 권능을 가진 타자의 목소리와 문체와 매체를 통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발화를 공적 효력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서발틴의 성격과 같다. 최소한 이들이 정말로 말했던 것이나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는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제도적 공인된 수단과 권위를 지닌 타자의 목소리를 통해 들리고 읽힐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상황에 따른 ‘제한적 행위주체’로 규정하고자 한다. 두 인물은 사족 여성으로서 신분적 지위를 지녔지만 동시에 공적 장에서 직접 발화하기 어려웠던 젠더화된 제약을 함께 지닌 존재로서 다중성을 띤 차별의 교차점에 선 존재인 것이다.⁹⁾

그렇다면 제한적 행위주체로서 두 여성은 과연 어떻게 행위주체로서 수행성을 갖는가? 다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주체가 수행하는 담화 전략을 생각해 보자.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이고 공적인 실행력을 갖춘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타인과의 연계 하에서 그들은 실제적인 행위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므로 또한 중요한 것이 ‘대리 발화’이다. 대리 발화란, 사회적이고 공적인 실행력을 갖춘 공적 권위를 지닌 자가 자신의 발화를 대리하게 하는 것이다. 스피박의 표현을 빌면, 재현,

타자의 말을 대신한다고 할 때 발생하는 매개의 문제를 지적한다. 젠더화된 하위주체의 경우에는 그 발화가 들리거나 읽힐 수 있는 제도적 공간 자체가 부재한다고 보았다. 위의 책, 2013, 129~131쪽 참조.

- 9) 사람은 복잡한 인간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다면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또한 다중적으로 발생한다. 유색인종이면서 여성인데 장애를 갖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세에 있다면, 그에게 차별은 인종적이고 성적이며 장애인으로서 빈부격차와 사회적 차별 속에 복합적인 형태, 또는 독특한 제3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차별의 교차성이다.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54쪽.

곧 정치적 대변과 재-제시를 의미한다. 두 여성의 서발턴으로서의 성격, 곧 서발턴이기는 여기에서 드러난다. 곧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는 어렵지만 대리자의 발화를 통해 이들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존재하고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¹⁰⁾ 이때 제한적 행위주체의 언어는 필요에 의한 구성의 방향성과 행위의 경향을 갖고 서술되고, 그럼으로써 들을 수 있고 읽힐 수 있게 된다.¹¹⁾

본고의 목적은 두 여성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말하였다’는 일반적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또 누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두 여성이 어떻게 각각 다른 제도적 통로와 대리 발화를 통해 사적 발화를 공적 담론으로 전환하여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는 데 있다.

2. ‘유연 옥사’를 둘러싼 엇갈린 진술들과 논의의 초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늘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부족하면 사람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을 도모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행력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움직일 의사 소통, 곧 담론으로서의 대화, 담화이다.¹²⁾ 따라서 ‘담화 전략’이란 단순한

10) 이들이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어떤 수단이나 대리자를 통해 발화함으로써 자신의 발화를 청취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실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들은 분명 제한된 행위주체로서 서발턴이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가야트리 스피박, 앞의 책, 61~65쪽 참조.

11) 크리스 바커·다라우시 갈라신스키 지음, 백선기 옮김,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57쪽.

12) 위의 책, 57쪽.

언술 방식이나 수사적 표현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특정한 발화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위치, 발화가 가능한 장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개자, 제도적 절차를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공적 효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유연 옥사의 경우, 발화는 개인의 감정 표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고변, 상소, 공초, 가승, 전이라는 제도적·문자적 형식을 거치며 사람을 움직이고 처벌을 낳으며, 사건과 그 사건의 진실에 대한 후대의 기억을 구성한다.

먼저 실록에 전하는 유연 옥사의 대강을 살펴보자. <명종실록> ‘명종 19년 갑자 3월 20일 임술, 형 유유를 살해한 학생 유연을 처형하다’ 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학생 유연을 처형하였다. 이에 앞서 대구부에 살던 유유(柳游)가 10여 년 전 마음의 병을 앓아 미쳐서 떠돌아다니다가 해주(海州) 경내에 흘러 들어와 우거하였다. 칩을 얻어 머물러 살았는데 혹 유유라 일컫기도 하고 혹 성명을 바꾸어 채응룡(蔡應龍)이라고도 하더니, 올봄에 칩을 데리고 서울에 왔다. 그의 매부(妹夫) 달성 도정 지(達城都正視)가 소문을 듣고 불러 보았더니, 떠돌아다니면서 고달픈 나머지 얼굴 모습은 변하였으나 말과 동작은 실지로 유유였다. 유의 아우 유연은 대구 본가에 있었는데 지가 연에게 통지하여 연에게 데리고 가게 하였다. 연이 올라와서 서로 보고는 드디어 함께 돌아가는 중에, 맏이 자리를 빼앗아[奪嫡]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는 못된 꾀를 내어 결박하고 구타하고는 그 형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구부에 소송하였다. 부사 박응천(朴應川)은 유연의 말을 먼저 믿고는 단지 유유만을 가두었는데 유유의 아내 백 씨가 그때까지 그의 집에 있었다. 만일 대면하게 하였으면 당장 분별할 수 있었으니 의심스러워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중에 유유가 병을 얻어 보방(保放)되자 연이 형을 해치는 꾀를 행하도록 하여 끝내 증거를 없애는 지경에 이르렀다. 형을 해쳐 인륜을 어지럽힌 자를 즉시 시원하게 다스리지 않았으므로, 온 도의 사람들은 모두 통분스럽게 여기었다. 뒤에 연관(言官)의 아뢰임으로 인하여 금부

(禁府)에 내려 추국(推鞠)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연이 그 죄를 자복하였다.¹³⁾
『명종실록』

실록의 서술에서 유연은 형 유유의 가권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형을 죽이고 그 흔적을 없앴 십악의 죄를 저지른 강상 죄인으로 기록되었다. 기사는 유연 옥사를 형을 죽인 십악의 범죄로 기록하였으나, 사건의 전개에 있어 유유의 아내 백 씨가 ‘대면하게 하였으면 당장 분별할 수 있었으니’라는 대목을 통해 볼 때, 이 사건에서 백씨의 유유의 진위 판별이 중요한 지점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연전>의 서사는 사건의 뒤바뀐 진실을 제시한다. 유연이 처형된 뒤에도 유유가 살아있다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고 선조 13년(1580) 경연에서 수찬 윤선각이 천유용이라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그가 실제 유유임이 밝혀진다. <유연전>에 따르면 채응규는 유연의 종매부 달성령 이지 와 심룡 등이 유연의 아버지 유예원으로부터 받은 땅과 재산을 빼앗기 위해 사주한 인물이었다. 이는 유연 사후 16년 만에 이루어진 반전이었고, 이를 통해 형을 죽인 강상 죄인으로 처형된 유연은 신원된다. 달성령 이지는 심문 중 매를 맞아 죽고 채응규는 추포되어 압송되는 중 자살했으며 채응규의 처 춘수는 사형당한다. 이러한 사건의 전말은 유연의 아내 이 씨

13) 學生柳淵伏誅. 先是, 大丘府居柳游, 十餘年前, 病心狂走, 流寓于海州境內, 得妾住活, 或稱爲柳游, 或變姓名爲蔡應龍. 乃於今年春間, 率妾來京. 其妹夫達城都正 視聞而招見, 則遷徙困頓之餘, 形容雖變, 言語動止, 實柳游也. 游之弟柳淵, 在大丘本家, 視通諭於淵, 使之率去. 淵上來相見, 遂與同歸中, 生奪嫡專財之邪計, 結縛傷打, 謂非其兄, 訴于大丘府. 府使朴應川, 先信柳淵之言, 只囚柳游, 而游之妻白氏, 尚在其家, 若令對面, 可以立辨, 非疑似難斷之事. 及柳游得病保放, 使淵得行賊兄之計, 終至於滅迹. 賊兄亂常之人, 不即快治, 一道之人, 皆爲痛憤. 後以言官之啓, 下禁府推鞠, 至是淵服其罪. <명종 19년 갑자 3월 20일 임술> 한국고전종합정보DB, https://sillok.history.go.kr/id;jsessionid=LdFaacyv4et08THV213qaKWyetj1CMAIASu-xIo.node20/wma_11903020_002

가 자신의 기억과 집안의 가승을 종합하여 이원익에게 주고, 이원익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항복이 <유연전>을 지음으로써 후대에 전해졌다. <유연전>의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유예원의 아들 유유가 미쳐서 가출한다.
- ② 예원이 죽자 유유의 동생 유연이 상을 치른다.
- ③ 매부인 달성령 이지가 자칭 유유라는 사람이 해주에 살고 있다고 전한다.
- ④ 유연이 종을 보내 살피게 하였으나 유유가 아니라면서 혼자 돌아왔다.
- ⑤ 달성령은 그를 의심하지 말라는 편지를 연에게 보낸다.
- ⑥ 달성령이 유유라 자처하는 채응규가 자신의 집에 와 있으니 와서 보라고 하였다.
- ⑦ 유연이 채응규를 만나보기 위해 대구에서 올라왔으나 확신하지 못한 반면, 달성령과 심룡은 그가 진짜 유유라고 하였다.
- ⑧ 연이 채응규의 진위 여부를 고향에 가서 판별하고자 예를 갖추 고향에 함께 데리고 갔다.
- ⑨ 유유의 처 백 씨의 몸종 늘비가 채응규를 보고는 유유가 아니라고 하였다.
- ⑩ 유씨 집안 사람들이 채응규와 대면하지만 서로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 ⑪ 부사 박응천의 심문에 채응규가 횡설수설하며 답하지 못했다.
- ⑫ 부사가 채응규를 하옥하고 문초하였다.
- ⑬ 채응규가 그 아내 춘수의 병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날 밤 함께 사라졌다.
- ⑭ 유유의 처 백 씨가 유연이 형을 죽이고 종적을 없앴다고 상소했다.
- ⑮ 감사가 연과 춘수, 박석 등을 가두었다.
- ⑯ 연의 처 이 씨가 연의 무고함을 상소했다.
- ⑰ 심통원이 논계를 올려 연의 옥사를 빨리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 ⑱ 달성령, 심룡, 김백천이 사라진 채응규가 진짜 유유라고 증언할 것을 모의했다.
- ⑲ 연이 그간의 일과 채응규가 형이 아닌 이유를 공조했다.
- ⑳ 달성령, 심룡, 김백천은 모두 사라진 채응규가 유유라고 공조하였다.

- ㉑ 춘수가 연의 채응규 살해 가능성을 증언했다.
- ㉒ 심통원은 유연만이 채응규를 가짜라고 하는 점을 들어 곤장을 치게 하였다.
- ㉓ 유연이 무복(誣服)하고 원정하였다.
- ㉔ 추관이 유연을 고문하고 능지처참으로 다스렸다.
- ㉕ 유연은 옥에서 죽기 전 이 씨에게 신원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 ㉖ 시간이 흘러 유유가 살아있다는 말과 유연의 옥사가 미심쩍다는 말이 분분했다.
- ㉗ 윤선각이 경연 자리에서 천유용이라는 사람이 유유와 비슷하다고 아뢰었다.
- ㉘ 연이 이 씨의 꿈에 나와 유유가 나타날 것임을 알려주었다.
- ㉙ 천유용이 자신이 유유임을 실토하였다.
- ㉚ 유유라 자칭했다 사라진 채응규와 그의 첩 춘수를 다시 추포하였다.
- ㉛ 한양으로 압송 중 채응규가 자결했다.
- ㉜ 춘수가 사건의 전모를 실토했다.
- ㉝ 이 씨가 소를 올리고 연의 국문을 담당했던 추관과 낭관에 대한 국문을 실시했다.
- ㉞ 유유는 유배형을 받고 춘수는 처형, 달성령은 조사 중 매를 맞고 옥사했다.
- ㉟ 돌아온 유유가 백 씨를 만나 질책했다.
- ㊱ 백 씨가 채응규와 춘수의 아들 정백을 양자로 삼았다가 유유가 돌아오자 관에 고발했다.
- ㊲ 춘수의 형 영수는 채응규를 잡게 해주겠다고 이 씨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가 붙잡혔다.
- ㊳ 논찬¹⁴⁾

14) 이항복, <유연전>, 386~398쪽. 서사단락 정리는 정인혁, 「<유연전>의 시점과 플롯 연구」, 『어문연구』 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143~158쪽에서 수정 재인용.

이처럼 <유연전>은 실록에 서술된 강상좌의 판단을 뒤집고 유연을 신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재구성한다. 논찬에서 서술자는 비록 유연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며, <유연전>을 통해 유연의 지극한 원통함도 씻어주고 벼슬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¹⁵⁾

그러나 주모자로 지목된 달성령 이지의 입장은 달랐다. 이지의 아들 이언용이 권득기로 하여금 짓게 한 <이생송원록>은 <유연전>을 논박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언용은 <유연전>에는 없는 추안과 국안(推案及鞫案), 공초문 등을 바탕으로 <유연전>이 주장하는 것들의 모순을 지적한다. 그 주장에 따르면 달성령의 범행 동기를 특정한 유연의 편지는 사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달성령의 범행 동기가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달성령의 범행 알리마이를 증언하는 춘수의 증언은 갑자기 번복되었고, 모든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응규와 유유의 부인 백 씨에 대한 조사가 매우 미흡했다는 것이다. <유연전>을 지은 이항복 역시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유연전>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유연전후서>를 남겼다고 하니 <이생송원록>이 제시한 정보와 주장도 일정한 설득력을 가졌음은 분명하다.

<유연전>은 이항복이 작성한 한문 산문이며, 사건 직후의 원자료가 아니라 유연의 처 이 씨의 기억과 가승, 이원익의 전언을 거쳐 유연의 신원을 위한 목적 아래 쓰여진 것이고 <이생송원록>은 달성령 이지의 무고를 밝히려는 목적 아래 <유연전>을 반박하는 서사이다. 따라서 두 텍스트는 모두 사건을 투명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진실을 구성하려는 담론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본고의 목적은 두

15) 亂後, 李相元翼治第于金虎門外, 與李氏連門停, 具聞事始終而傷其冤. … 爲余言之, 且曰願托知言者, 以圖不朽. 退會, 盡取其家乘, 使來速譚曰, 且事若成 至冤可雪 <유연전>, 397쪽.

텍스트 중 어느 쪽이 사실에 더 가까운가를 최종 판정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본고는 각각의 텍스트가 어떤 근거를 동원하고, 어떤 인물의 말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만들며, 어떤 제도적, 문자적 장치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공적 담론으로 승인받게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연 옥사의 핵심적인 두 여성, 백 씨와 이 씨의 행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백 씨는 사건의 성격을 바꾸어 시동생 유연을 강상죄로 몰아간다. 그는 채응규의 진위를 직접 판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관정에서의 대면을 회피하고, 이후에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사건을 형 살해의 법적 절차로 전환시킨다. 반대로 이 씨는 억울한 남편의 신원을 위해 기억과 언문 가승을 보존하고, 이를 지언자(知言者)에게 맡겨 제도적, 공적 권위를 지닌 한문 서사로 구성되도록 한다. 두 인물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평가는 다를 수 있으나, 두 여성이 제한된 위치에서 공적 효력을 산출하는 담화의 주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요컨대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사건의 최종 진실이나 두 여성의 도덕성이 아니라 유연 옥사를 둘러싼 두 여성이 제도와 문자를 활용하여 자신의 발화를 효력 있는 공적 담론으로 전환하는 담화 전략이다. 백 씨의 경우 문제의 핵심은 돌아온 ‘남편의 진위를 아는가’가 아니라 그 개인적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고변의 언어로 바꾸었는가에 있다. 이 씨의 경우에는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는가’가 아니라, 그 호소가 어떤 매개, 어떤 대리자를 통해 제도적 권위를 승인받는 한문 서사와 공적 기억으로 전환되었는가에 있다. 다음 장에서는 먼저 백 씨가 사건의 성격을 남편의 진위 판별에서 강상 고변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피고, 다음으로 이 씨가 언문 가승과 기억을 <유연전>이라는 권위 있는 문자 서사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3. 두 여성의 담화 전략

1) 백 씨: 신원 확인에서 강상 고변으로

백 씨의 담화 전략을 단순히 ‘가짜 남편을 진짜라고 속였다’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채응규와 백 씨가 진짜 공모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아온 자가 유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채응규가 자신의 진짜 남편이며 그를 시동생 유연이 죽였다고 고발한 것을 볼 때 백 씨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유추된다. 백 씨는 총부법(冢婦法)에 따라 제사를 승계할 수 있었지만, 당시 유연이 이미 유예원의 장례를 지냈기 때문에 제사를 승계할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백 씨의 입장에서는 제사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서는 유연이 제거되어야 했다. 이는 백 씨가 채응규가 가짜라는 것이 입증되기 전에는 비록 첩의 자식이기는 하나 그의 첩 춘수와 의 사이에서 낳은 정백이 유씨 집안의 장자가 되므로 그를 시양자(侍養子)로 삼아 계후로 삼고자 했던 것과도 상통한다.¹⁶⁾

그러므로 주목할 것은 백 씨가 유유라며 나타난 귀환자의 정체를 둘러싼 판단의 과정을 어떻게 통제했으며, 그 통제가 결과적으로 사건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하는 것이다. <유연전>이 백 씨를 부정적으로 서술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텍스트에는 백 씨의 발화가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몇 가지 뚜렷한 장면이 남아 있다.

(1) 사적 정보의 통제와 진가 판별의 지연

먼저 확인되는 사실은 백 씨와 채응규 사이에 대구 도착 이전부터 사적 연락의 흔적이 있었다는 점이다. <유연전>에서 유연은 형수와 채응규 사

16) 정공식, 「<柳淵傳>에 나타난 相續과 그 葛藤」, 『법사학연구』 21, 한국법사학회, 2000, 10쪽.

이에 오간 편지가 두 차례 있었고, 겨울에 달성령 이지가 보낸 종 삼이에 따르면 백 씨에게 채응규의 편지를 전했다고 진술도 있다고 하였다. 유연이 형의 필체를 확인하기 위해 그 편지를 보여 달라고 하자, 백 씨는 이미 잃어버렸다고 답한다.

형수의 편지에 답장하여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이 한 것이 두 번이었습니다. 다시 겨울에 매부 지가 삼이를 보내왔기에 제가 형님께서 보낸 편지냐고 묻자 삼이가 백 씨 부인에게 편지를 이미 갖다드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형수께 형님의 편지를 보여 달라고 하니, 형수는 이미 잃어버렸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因答白氏書以還之。如是者再。又於冬間，褻委差奴三伊來，臣間，兄當有書，三伊曰，於白家已有書矣。臣於白氏，求見兄書，則托言已失。〈유연전〉，390쪽.

이를 두고 곧바로 백 씨가 채응규와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편지의 실제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진술은 채응규 및 백 씨와 반대 측에 위치한 유연 측 공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은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백 씨는 귀환자의 정체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관련자였음에도 그와 관련된 사적 문서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둘째, 그 거부는 필체 확인이라는 비교적 쉬우면서도 진실에 접근하는 강력한 객관적 식별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셋째, 그 결과 귀환자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물증보다 말과 태도, 증언의 신뢰성에 의존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 점에서 남편의 진위와 관련한 가장 권위 있는 증언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내의 사적 정보, 증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생송원록>에 보이는 신흠 첫날밤의 월경 흔적과 신체의 은밀한 점에 관한 진술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이생송원록>에 따르면 채응규는 자신이 유유라는 주장을 위해 백 씨와의 신흠 첫날밤 백 씨가 월경을 해서 단의 밖으로 피가 배어 나왔던 일과 백 씨의 왼쪽 허벅지 깊은 곳에

콩알만 한 검은 점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¹⁷⁾ 이 진술의 출처를 백 씨에게 돌릴 수 있는지는 주어진 텍스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다. 다만 그 정보는 부부 사이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적 정보였고, 증거로 제시되었으나 직접 검증하기 곤란한 성적·신체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쉽게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어려운 사적 정보, ‘은밀한 앞’으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백 씨의 첫 번째 전략, 사적 정보를 공적 판단의 근거로 제출한 것은 그 정보의 공개와 확인 가능성을 통제함으로써 진가 판별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귀환자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가 진짜 누구인지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물적 증거, 곧 신체 자체가 아니라, 증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 것인가라는 담론으로 전환된다. 이때 발생한 채응규의 사라짐은 백 씨의 담화 전략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공교롭게도 매우 시기적절했다.

(2) 대면 거부에서 고변으로: 발화 장면의 전환

다음으로 백 씨는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자격으로 말할 것인가를 교묘하게 바꾸었다. 처음 관정에서 귀환자와 대면하여 진위를 확인하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 백 씨는 이를 거부한다. <유연전>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집안사람과 일가붙이 모두가 유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녀자가 사족으로서

17) 만약 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마땅히 은밀한 일을 증거로 대겠다. 혼인날 밤 아내에게 월사가 있어 단의 밖으로 피가 배어 나왔고, 또 왼쪽 다리 깊은 곳에 콩알만 한 검은 점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실로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백씨에게 물어보라. 若言非眞, 當徵密事. 婚夕, 拙婦有月事, 透染短衣, 且左脚僻處, 有黑子大如菽, 此兩事實爲左驗, 可問白氏 <이생송원록>. 강명관, 앞의 책, 259쪽 재인용.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자를 어찌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監司令白氏親辨, 則拒不就曰, 家人族黨咸曰非游, 妾以士族豈宜與所不知何人者對面也. <유연전>, 390쪽.

백 씨는 ‘사족 여성’이라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근거로 공개 대면의 요구를 거절한다. 이때 사족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제약이면서 동시에 전략적 자원이 된다. 공개된 관정에서 낯선 남자와 대면할 수 없다는 말은 가부장적 예법의 언어이지만, 그 언어는 동시에 진위 판단의 핵심 절차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채응규가 사라진 뒤 백 씨의 태도는 급격히 바뀐다. 그는 관정에 스스로 직접 나아가 초췌한 모습과 상복 차림으로 밤낮 울며 감사에게 호소한다. <유연전>은 백 씨가 유연을 ‘불량한 아우’이자 재물을 탐한 살인자로 고발하며, 유연이 형을 죽이고 그 흔적마저 지웠다고 주장했음을 전한다. 여기서 사건은 더이상 ‘돌아온 사람이 유유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생이 형을 죽였는가’라는 강상 범죄의 문제로 전환된다.

백 씨는 초췌한 모습으로 상복을 입고 밤낮 울며 감사에게 호소했다. 남편에게 불량한 아우가 있어 재물을 탐하는 것이 한정이 없고, 진짜를 가리켜 가짜라고 하면서 형을 결박해 관에 가두고 큰 재앙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본래 광증을 앓고 있는데 구금당한 뒤 병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행하게도 태수께서 간혀 있는 것을 면하게 해 주셔서 병을 치료하는 중에, 유연이 지키는 자에게 뇌물을 써서 형을 죽이고 그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유연의 죄를 논하여 아녀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白氏累然服斬, 日夜哭訴監司曰, 夫有不良弟淵, 貪貨無厭, 指眞爲僞, 縛兄官囚, 圖嫁淫禍, 夫本病狂, 被拘益重, 幸蒙太守, 免監治疾, 淵賂守者, 賊殺掩迹. 乞論淵罪, 以洩婦冤. <유연전>, 388~389쪽.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은 태도의 ‘돌변’과 함께 발화 장면의 전환이다. 백 씨는 진위 판별의 증인으로 호출될 때에는 사족 여성이라는 이유로 물러서지만, 남편을 잃은 피해자로서 호소할 때에는 관정의 공적 발화자로 나선다. 다시 말해 그는 ‘확인해야 할 증인’의 위치는 거부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위치를 선택한다. 이 전환이 바로 사건의 성격과 법적 의미를 바꾸는 핵심 담화 전략이다.

(3) 반복 호소와 사건 관할지의 변경

백 씨의 고변은 일회적 발화에 그치지 않았다. <유연전>은 백 씨가 하소연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 결과 사건 관련자들이 현풍으로 이송되었다고 전한다. 대구 지역에서는 채응규가 유유가 아니라는 의견이 강했으므로, 관할지의 변경은 유연에게 불리하고 백 씨에게 유리한 절차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도망한 자는 유가 아니라 응규란 놈이오, 도망간 것이야말로 명백한 증거이니, 나 역시 연의 원통함을 알고 있소. 다만 백 씨가 하소연하기를 그치지 않아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이니 그저 집에 물러가 있으시오. 백 씨가 그들을 이웃 고을로 이송하기를 애걸하여 현풍으로 옮겨 수감했다.

逃者非游… 我亦知淵冤, 但白氏訴不已, 事體不得不爾… 白氏乞移隣邑, 遂移囚玄風. <유연전>, 389쪽.

이 장면은 백 씨의 전략이 ‘내용’의 설득에만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반복된 호소를 통해 사건의 처리 조건 자체를 바꾸었다. 그의 반복된 호소는 여기서 단순한 감정 과잉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관아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소송 행위가 되며, 법적 절차를 움직이는 수행적 발화가 됨을 의미한다.¹⁸⁾ 특히 ‘소를 그치지 않았다(訴不已)’와 관할지를 ‘인근 읍

으로 옮겨 줄 것을 요청했다(乞移隣邑)’와 같은 표현은 백 씨의 발화가 실질적 행정 절차의 결정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사건은 신체와 목소리, 그리고 기억을 통해 귀환자의 진위를 따지는 문제에서 사대부 남성 유연이 재산을 탐하여 형을 살해한 강상 사건으로 굳어진다. 백 씨는 자신의 사적 정보를 뒤로 숨기고 피해자의 지위를 확보하며, 반복 호소를 통해 사건의 성격을 바꾸었다. 가짜 남편 사기 사건일 수 있었던 일이 강상 범죄로 재명명되었고, 이 재명명은 유연의 무복과 처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백 씨의 담화 전략은 ‘진위 확인 절차를 강상 고변 절차로 전환’한 것이다.

백 씨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사건을 기획했는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텍스트를 통해볼 때, 백 씨의 말과 태도로 드러난 담화 전략의 효과는 분명하다. 그는 공적 대면을 회피하면서 사적 증거의 검증 가능성을 낮추었고, 이후 반복된 고변을 통해 사건의 법적 성격을 바꾸었으며, 관할지 이동이라는 법적 절차의 실질적 변화를 공식적으로 이끌어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목소리가 비슷한지 수염이 적은지 많은지, 왜소한지 키가 큰지, 또는 성기 가까이 은밀한 곳에 접이 있는지 등의 물질적인 육체와 관련된 ‘사실’ 논증에서 벗어나 사법적인 차원의 문제로 옮겨가게 한 백씨의 전략은 적중한다. 성리학적 제도화가 집중되던 시기, 형을 죽인 강상죄인 유연의 죄는 너무도 악한 것이었다. 사법 체계로 편입된 이 사건은 법적 관행의 문법을 따르며 법조문에 따른 엄격한 처벌로 나아간다. 간관이 이미 강상 죄인이라 호명한 유연의 입을 쳐 발언권도 빼앗고 유연의 무복이 나오자 곧 극형에 처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18)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6, 131쪽.

2) 이 씨: 언문 가승(家乘)에서 〈유연전〉으로

이 씨의 담화 전략은 백 씨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한다. 백 씨가 법적 절차 안에서 사건의 성격을 바꾸었다면, 이 씨는 사건 이후의 기억과 기록을 통해 유연의 원통함을 공적 서사로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 씨의 행위에 주목하여 기존 논의에서 이른바 ‘문자화’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고는 그 성과를 수용하되, 이 씨의 문자화가 단순히 언문을 한문으로 옮긴 과정이 아니라, 여성 개인의 사적인 감정적 언어를 공적이고 권위적인 법률어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 제도권 남성 지언자(知言者)를 통한 대리 발화를 통해 목적인 바를 이루고자 하는 담화 전략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살필 것이다.

(1) 언문 가승의 문자화와 공적 승인

<이생송원록>은 <유연전>의 토대가 된 이 씨의 기록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그 이유는 이 씨가 ‘일개 부인’이고, 그녀의 기록이 ‘언문’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이 노복의 말이나 길에서 들은 ‘소문’에 의존했다는 데 있다. 이 비판은 단순히 자료 비판의 형식만을 지니지 않는다. 그것은 여성이 작성한 언문 기록을 공적 증언의 장에서 신뢰성이 낮은 자료로 격하시키는, 이른바 호명 권력¹⁹⁾을 여실히 드러내는 발화이다.

유연의 처 이 씨는 언문으로 연이 억울하게 죽은 정상을 초록했는데, 완평, 오성 두 분 승상이 이 초록에 근거하여 전을 지었다. 무릇 이 씨는 일개 부인일 뿐이다. 유연의 억울한 마음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그녀보다 앞설 수 없다. 하지만 당시 국문하던 실정과 증좌, 공초의 말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 들은 것은 대개 노복들의 말로 전한 것이거나 길에서 떠도

19)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는 그 집단의 인식에 자리 잡은 차별적 의식을 드러낸다. 김지혜, 앞의 책, 93~94쪽.

는 헛소문에서 나온 것이며 수십 년 뒤에 기록한 말이니 그 실상을 얻지 못한 것이 있다.

淵妻李氏, 以諺字抄錄淵枉死之狀, 完平龜城兩丞相, 因之以作傳, 夫李氏一婦人耳. 其於淵冤枉之心, 曲知之者, 固莫能先也. 至於當時鞫獄之情, 證佐供招之辭, 則有未能詳者, 其所聞, 蓋皆出於奴僕信口之傳, 道聽塗說之訛, 數十年後追抄之語, 容有未得其實. <이생송원록>, 63쪽.

이 대목은 이 씨가 처한 제한성을 잘 보여준다. 이 씨는 사족 가문의 부인이지만, 공초와 국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남성 관료가 아니었다. 또한 그녀가 남긴 언문 가승은 가족 내부의 기억을 담은 기록일 수는 있어도, 한문으로 작성된 공적 기록과 동일한 권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이처럼 이 씨의 기록은 신분적으로는 양반가 내부의 자료이지만, 젠더와 문자 체계의 차원에서는 하위화된 자료였다.

이 씨의 전략은 바로 이 하위화된 기록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는 데 있었다. <유연전> 말미에서 이 씨는 사건의 시말을 이원익에게 전하고, 이원익은 다시 이항복에게 이를 말하며 ‘지언자에게 맡겨 후세에 전하고 싶다’고 한다. 여기에서 ‘지언자(知言者)’는 단순한 필사자나 대필자가 아니다. 그것은 이 씨의 기억과 언문 기록을 공적 한문 서사로 전환할 수 있는 문자 권위의 담당자를 의미한다.

원컨대 지언자에게 맡겨 이 사실을 후세에 전했으면 한다.

願托知言者, 以圖不朽. <유연전>, 397쪽.

요컨대 이는 지언자의 문자를 통한 언문 가승의 공적 승인이다. 이 씨는 언문 기록을 폐기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억하고 보존하다 지언자에게 제공하고 의탁함으로써 공적인 한문 서사로 승격시킨다.

(2) 감정적 언어의 법률어화

이 씨의 호소에서 감정은 중요한 동력이다. 그러나 그 감정은 단순히 비탄이나 애도에 머물지 않는다. <유연전>은 유연이 죽은 뒤 이 씨가 궁벽한 곳에 숨어 살며 매일 동틀 무렵 향을 사르고 남편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 하늘에 빌었다고 전한다. 이 장면은 남편을 잃은 아내의 정절과 애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씨가 장기간 유연의 신원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동력을 보여준다.

연이 죽은 후로 그의 아내 이 씨가 조용히 궁벽한 마을에 숨어 살면서 매일 동틀 때면 향을 사르고 남편의 원통함을 씻어 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 이튿날 저녁에 유옹이 사헌부에 체포되었음을 이 씨가 듣고는 곧바로 사헌부에 아뢰길, 죽임을 당한 지아비 연은 시매부 지가 재물을 차지하려는 다툼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극형을 당했습니다. ... 삼가 지아비 연이 죽음에 임해 남긴 유언을 바칩니다.

自淵死, 李氏泯泯窮理, 每日味爽, 輒焚香祝天如初, 願雪夫冤. ... 翌夕, 裕勇就法府, 李聞即訴府曰, 強死人淵, 因視爭財, 枉伏極典. ... 謹以淵臨絕遺言一道呈上. <유연전>, 394쪽.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願雪夫冤’, ‘強死人’, ‘極典’, ‘遺言一道呈上’ 등이다. 이 씨의 말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사적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호소의 문장은 원통함의 해소, 억울한 사형, 극형, 유언 제출과 같은 법률적·행정적 어휘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이 씨의 감정은 공적 절차에서 쓰고 읽히는 언어로 번역된다. 이를 ‘감정 언어의 법률어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씨가 언문 가승을 한문 서사로 문자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연전>이 설득력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주목할 부분은 이 씨의 호소가 애도하는 아내의 정서적 정당성과 함께 법적으로

억울하게 처형된 자의 신원을 요구하는 공적 어휘를 동시에 결합한다는 점이다. 이 결합으로 인해 이 씨의 말은 단순한 가족 내부의 하소연이 아니라, 관료와 문사의 언어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이 씨가 유연의 억울함을 말했다 하더라도 권위 있는 제도적 체계에서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말할 때 비로소 읽히고 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 씨의 담화 전략은 이 과정을 이루어내는 것이었다.

물론 이 감정 언어의 범용어화로 인해 이 씨의 목소리는 <유연전> 속에서 이원익의 전언과 이항복의 문장으로 재구성된다. 그러나 바로 그 매개 과정 때문에 이 씨의 호소는 공신력 있는 문장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씨의 전략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인 자기표현으로 남기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그것을 제도와 문자가 승인할 수 있는 언어로 전환시킴으로써 제한된 행위주체로서의 한계를 넘어 유연을 신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씨의 대리 발화가 읽으면서 얻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3) 지언자(知言者)에게 맡긴 대리 발화의 기획

따라서 이 씨의 전략은 대리 발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대리 발화가 가능한 조건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연전>은 이원익이 이 씨의 집과 이웃하여 살게 되었고, 사건의 시말을 들은 이원익이 그 원통함을 이항복에게 알려 전을 짓도록 했다고 전한다.

난리 후에 정승 이원익이 금호문 밖에 집을 지었는데 이 씨의 집과 문이 잇닿아 있어 사건의 시말을 모두 듣고 그 원통함에 가슴 아파하였다. ... 나를 위해 그 일을 들려주고, 또 이르기를 원컨대 지언자에게 맡겨 이 사실이 후세에 길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궁에서 물러 나오자 그 집 가승을 모두 거두어 가져오게 하고 서둘러 지으라 하며 말하길, 만약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지극한

원통함을 씻을 수 있을 것이고….

亂後, 李相元翼治第于金虎門外, 與李氏連門停, 具聞事始終而傷其冤. …
爲余言之, 且曰願托知言者, 以圖不朽. 退會, 盡取其家乘, 使來速譔曰, 且事
若成 至冤可雪… <유연전>, 397쪽.

이 장면은 이 씨의 발화가 세 단계를 거쳐 공적 담론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첫째, 이 씨는 사건을 기억하고 가승을 보존하였다. 둘째, 그는 이원익에게 사건의 시말을 전함으로써 자신의 말이 권위 있는 청자를 만나게 하였다. 셋째, 이원익은 이항복에게 이를 전달하고, 이항복은 <유연전>이라는 한문 서사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씨의 목소리는 직접성은 잃었지만, 대신 지속성과 권위를 얻었다. 그러므로 일견 대리 발화는 여성의 목소리를 빼앗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그 목소리를 공적 장으로 이동시키는 통로이다.

지배적인 남성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제한된 주체로서의 여성이 그 목소리를 빌려 자신의 뜻을 전한다는 점에 대리 발화의 이중성이 있다.²⁰⁾ 이 씨는 <유연전>의 저자가 아니며, 완성된 텍스트의 문체와 논평은 이항복의 것이다. 그러나 그 텍스트를 가능하게 한 자료의 보존, 사건의 전달, 지언자에게의 의탁은 이 씨의 행위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씨를 단순히 이항복 서사의 배후 자료 제공자로만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제한된 발화권을 인식하고, 그 한계를 지언자의 문자 권위로 우회한 기획자이다.

기획자로서의 이 씨의 성격은 실천적 차원에서도 확인된다. <유연전>

20) 전술한 바, 이 씨는 제한된 행위주체로서 타자의 발화를 대리하는 지식인, 곧 지언자를 필요로 한다. 스피박이 이야기한 대리 발화는 대리하는 지식인의 입장에서 주로 논의되지만, 본고에서는 제한된 행위주체로서 이 씨가 주체적으로 택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기제는 같지만, 그 행위의 주체가 제한된 주체로서의 이 씨일 수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앞의 책, 129~131쪽 참조.

은 이 씨가 춘수의 언니 영수와 그 남편에게 속아, 채응규와 춘수의 행방을 찾기 위해 시집을 때 가져온 패물을 팔아 돈을 주었다고 전한다. 이 일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이 씨가 단순히 기다리거나 울고만 있었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가능한 수단을 찾아 적극적으로 움직인 주체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가 이후 가승 보존과 대리 발화의 기획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연의 아내 이 씨는 하릴없이 지내면서 연의 원통함을 풀어줄 방법을 만방으로 생각했는데, 을축년에 춘수의 언니 영수와 그 남편 김현이 와서 제안했다. 가짜 유유가 죽지 않고 춘수와 태연하게 살고 있소. 만약 우리에게 후하게 사례하면, 우리는 그들의 종적을 찾을 수 있소. 이 씨가 믿고 시집을 때 치장했던 패물을 모두 팔아 수십 금을 마련해 주었다.

先是, 李氏常宴居深念, 謨所以白淵冤萬方. 乙丑年間, 春守兄永守及其夫金憲來言, 僞柳游不死, 與春守居自如. 若重賂我, 我能爲爾迹之. 李信之, 盡以嫁時粧直數十金贍之. <유연전>, 397쪽.

이렇게 볼 때 이 씨의 담화 전략은 단순히 ‘집단을 움직이는 감정적 호소’라기보다 ‘언문 가승을 공적 서사로 전환한 대리 발화의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남편을 잃은 여인의 사적 감정과 언문으로 된 가승의 기록을 공적 권위의 남성 청자와 법률 용어의 지언자 작가를 연결하여 후대의 지배적 담론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4. 유연 옥사와 <유연전>의 여성서사로서의 성격

유연 옥사에서 끝내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적지 않다. 채응규가 실제로 어떤 경로로 유씨 가문에 접근했는지, 달성령 이지가 사건에 어느

정도 연루, 또는 가담했는지, 백 씨가 채응규와 주고받은 편지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유유가 왜 집을 떠났는지, 어떤 것도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둘러싼 연구가 사실의 재구성을 목표로 삼을 때, 논의는 서로 다른 텍스트 중 어느 쪽을 더 믿을 것인가의 문제에 머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진실의 최종 판정보다 담화의 전략과 그 효과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백 씨와 이 씨의 전략은 서로 대조적인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 백 씨의 담화는 귀환자의 진위를 둘러싼 사적 판단을 강상 범죄의 법적 언어로 전환하였다. 편지의 비공개, 대면 거부, 사적 신체 정보의 증거화, 반복 호소와 이송 요청은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전략이었다. 이 씨의 담화는 남편의 억울함을 언론 가승과 사적 기억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언자의 문자 권위를 통해 <유연전>으로 전환하였다. 감정의 지속, 법률 어휘의 사용, 가승의 보존, 이원익과 이항복의 대리 발화는 유연 옥사에 관한 후대의 기억에서 이 씨의 담론이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하였다.

두 여성은 모두 사족 가문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가부장제에 완전히 종속된 하층 계급이 아니었다. 그러나 법정과 관료제, 한문 문자와 후대의 공론장에서는 직접적인 권위를 갖기 어려운 제한적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전략, 곧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여 발화가 가능한 장소를 선택하고 통제하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개자와 제도적 절차를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공적 효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그것은 가부장적 예법, 피해자의 위치, 법적 고변, 지언자의 권위와 같은 기존 질서의 자원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유연 옥사는 가권과 재산 상속, 강상의 윤리를 둘러싼 사대부 남성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제한된 행위주체로서의 여성이 제도와 문자를 통해 공적 효력을 얻으려는 담론 경합의 장이기도 하다.

물론 두 여성의 행위가 동일한 윤리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백 씨의

고변은 유연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유연전>은 그를 부정적 인물로 서술한다. 이 씨의 호소는 억울한 남편의 신원을 위한 것으로 서술되지만, 동시에 달성령 등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 본고가 주목한 것은 두 인물의 도덕성이 아니라, 두 담화가 각각 무엇을 성취했는가 하는 것이다. 백 씨는 남편의 신원 확인의 사적 정보의 제공 의무를 고변과 관찰지 이동이라는 법적 절차로 전환함으로써 회피하였고, 이 씨는 언문 기록과 애도의 감정을 지언자의 한문 서사로 전환함으로써 공인케 하였다. 나아가 사건에 대한 후대의 기억을 전환했다. 전자는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사법적 효과를, 후자는 <유연전>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유연 옥사에 관한 지배적 담론을 만들어내는 역사적 효과를 낳았다.

따라서 <유연전>은 단순히 억울한 남성의 신원을 밝힌 전이나 송사소설로만 읽히지 않는다. 그것은 유연 옥사를 둘러싼 경합적 담론 속에서 제한적 행위주체로서의 두 여성의 발화가 법적·문자적 매개를 거쳐 공적 사건을 만들고, 후대의 지배적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두 여성의 담화를 통한 국면 전환의 과정을 살필 때, <유연전>은 남성 인물들의 범죄와 신원만을 다룬 송사소설뿐 아니라, 제한된 위치의 여성이 법과 문자의 권위를 우회·활용하여 공적 담론을 형성한 여성서사로서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참고문헌

『명종실록』.

- 李恒福, <柳淵傳>, 朴熙秉 標點 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 權得己, <李生訟冤錄>, 『晚悔集』 권4, 『한국문집총간』 76, 민족문화추진회, 1991.
- 강명관, 『가짜 남편 만들기: 1564년 백씨 부인의 생존전략』, 푸른역사, 2021, 1~278쪽.
- 김영연, 「<이생승원록>을 통해 본<유연전>과 유연 옥사 담론」, 『국문학연구』 38, 국문학회, 2018, 205~232쪽.
- 김용기, 「인물 서사 비교를 통해서 본 유연 옥사와<유연전>의 간극: 진가 판별과 창작 의도를 겸하여」, 『온지논총』, 온지학회, 2021, 209~238쪽.
- 김정녀, 「유연 옥사에 관한 두 편의 서사와 증언의 재구성」, 『동양고전연구』 92, 동양고전학회, 2023, 119~152쪽.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1~243쪽.
- 김진영, 「<유연전>에 나타난 조선 중기의 사회변화와 지향의식」, 『어문연구』 84, 어문연구학회, 2015, 49~85쪽.
- 노꽃분이, 「<유연전>의 구성적 특징과 서술의식」, 『한국고전연구』 1,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345~371쪽.
- 박성태, 「<유연전>에 나타난 가정 갈등 양상 연구」, 『인문과학』 37,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6, 101~124쪽.
-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1~454쪽.
- 이현홍, 『한국 송사소설 연구』, 삼지원, 1997, 1~454쪽.
- 정궁식, 「<유연전>에 나타난 상속과 그 갈등」, 『법사학연구』 21, 한국법사학회, 2000, 83~100쪽.
- , 「<유연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16세기 형사절차의 일례」,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동성사, 2000, 341~352쪽.
- 정인혁, 「<유연전>의 시점과 플롯 연구」, 『어문연구』 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143~158쪽.
-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 1~544쪽.

-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6, 1~375쪽.
크리스 바커·다리우스 갈라신스키 지음, 백선기 옮김,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1~310쪽.

ABSTRACT

Discourse Strategies in the Yuyeon Prison Case
-Focusing on Two Female Characters in *Yuyeon-jeon*-

Jung, In-hyok

This study reexamines the Yuyeon prison case represented in Lee, Hangbok's *Yuyeon-jeon*(柳淵傳)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scourse strategies employed by two female characters. The women considered here, Lady Baek and Lady Lee, are not treated as merely silent or subordinate beings under patriarchy. Rather, they are understood as character who simultaneously possessed the status of members of elite literati families and were subject to institutional constraints as women. This study defines them as situationally constrained agents marked by a form of situational subalternity and analyzes how they transformed their restricted speech into discourse endowed with legal and textual public efficacy.

Lady Baek, Yuyeon's elder brother's wife, employed a discourse strategy that controlled the scene in which the identity of the man claiming to be Yuyu was to be verified and shifted the nature of the case from 'the identification of a husband' to 'a crime against the Confucian moral order involving the murder of an elder brother.' The exchange and concealment of letters between Lady Baek and Chae, Eung-gyu, her refusal to confront him in court, the presentation of intimate bodily information, her repeated appeals, and her request to transfer the jurisdiction of the case, as represented in the *Yuyeon-jeon* and *Leesaeng-songwonrok*(李生訟冤錄), can all be understood as procedural discourse strategies through which private information for identity verification was reconstructed as the public language of legal accusation. By contrast, Lady Lee, Yuyeon's wife, did not allow her husband's grievance to remain confined to vernacular family records and personal

memory. Instead, she entrusted it to authoritative 'knowers of words[知言者]' such as Lee, Wonik and Lee, Hangbok, who possessed public and institutional authority, thereby transforming it into the authoritative classical Chinese narrative of The *Yuyeon-Jeon*. In particular, Lady Lee's appeal did not remain a mere expression of emotion; it acquired persuasive force as public discourse by being translated into legal and administrative vocabulary such as 'a person wrongfully put to death[强死人]', 'the severest punishment[極典]', and 'redressing injustice[雪冤]."

Building on previous scholarship on the textualization of Lady Lee's testimony, this study further argues that such textualization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juridicization of affective language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ly authorized mediating speaker. In this respect, The *Yuyeon-jeon* may be reconsidered not as a transparent record that restores the truth of the Yuyeon prison case, but as a women's narrative that reveals the process by which the limited speech of two women acquired public efficacy through judicial and literary apparatuses amid competing claims surrounding the case.

Key Words Yuyeon prison case, *Yuyeon-jeon*, discourse strategy, situationally constrained agents, juridicization of language, representationally mediated speech, women's narrative

논문투고일: 2026.07.13.

심사완료일: 2026.08.06.

게재확정일: 2026.08.13.